

연구논문

사회영향평가의 원칙 및 지침에 관한 연구

-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

정주철 · 임재영

한국 환경정책 평가연구원

(2006년 12월 22일 접수, 2007년 1월 31일 승인)

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Social Impact Assessment: A Critical Review on the US Case

Jung, Juchul · Lim, Jaeyoung

Korea Environment Institute

(Manuscript received 22 December 2006; accepted 31 January 2007)

Abstract

Despite the ubiquitous practice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round the world, social impact assessment has been alienated from assessment process from the beginning. Not until 1993 was 'Interorganizational Committee' established in the United States to prepare for '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Social Impact Assessment.' This study is an attempt to critically examine US 'Principles and Guidelines.' First, the study traces history of social impact assessment to reveal why the latter became "the orphan in the assessment process." Second, it critically reviews 'Principles and Guidelines' to find its merits and defects. For instance, a principle regarding environmental justice is perceived as necessary as society has become conscious of social justice and equity while putting too much emphasis on predictive traits of social impact assessments only fosters "checklist mentality." Third, the study reflects on 'Principles and Guidelines' in particular and social impact assessment in general in order to probe what is social impact assessment. To do so, it pays attention to scholars, who have criticized technocratic and procedural elements of 'Principles and Guidelines.' They show that social impact assessment is philosophically and methodologically teleological in that "fluid and contested meanings" between social impacts and the public are meaningful in itself. And simple procedural guarantee of the public involvement, they argue, is not enough to define social impacts. Lastly, from the critical analysis of 'Principles and Guideline,' the study looks for alternatives to improve how to assess social impacts in a Korean context.

Key words : Social Impact Assessment, 'Principles and Guidelines,' Environmental Justice, technocratic, Social Variables

1.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환경영향평가는 법에 규정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여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환경부, 2005). 즉, 한 예로, 대형 개발사업의 경우 그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예측·평가하고 저감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환경은 자연환경, 생활환경, 그리고 사회·경제환경을 모두 포함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영향 평가서는 이러한 세 가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고려하여 작성되고 있다(환경부, 2005).

하지만 사회·경제환경이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비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평가를 위한 기법에 있어서도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김지영 외, 2002). 심지어 최근 진행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연구에 있어서는 실제평가 실무에 있어 사회·경제환경분야의 항목들이 주요 항목으로 선정되지 않고 현황제시에 그친다는 이유로 사회·경제항목을 제외 또는 축소하려는 경향마저 나타나고 있다(환경부, 2006).

하지만 최근 천성산 터널 및 행정복합도시 건설과 같은 대형 국책사업에서도 나타나듯이, 개발사업의 사회적 합의형성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개발사업에 대한 사회영향평가의 사회적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다. 개발사업 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사회영향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한상욱, 2000; 정용, 2001; 박순영, 2001) 또한 최근 환경사회학자들은 사회영향평가 제도화를 주장하고 있다(이시재, 2002). 미국의 경우 2003년 사회영향평가(SIA)에 관한 원칙과 지침을 새롭게 마련하는 등 사회·경제항목을 강화하려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사례, 특히 '사회영향평가의 지침과 원칙 마련을 위한 공동 위원회'(Interorganizational

Committee on Guidelines and Principles for Social Impact Assessment: IOCGP)에서 제시된 사회영향평가(SIA)의 원칙과 지침에 관한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에 있어 사회영향평가에 대한 원칙 및 지침을 발전시키는데 있다.¹⁾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한국의 환경영향평가에 있어 사회·경제환경항목을 살펴보고, 미국 공동위원회(1994, 2003)의 사회영향평가 작성기법의 기초연구로서 사회영향(social impact)의 개념, 사회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항목, 사회영향평가의 원칙 및 지침, 그리고 사회영향평가 과정단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미국 사회영향평가에 관한 여러 비판점 등을 고찰하였다. 연구방법론으로 사례연구(case study)와 문헌연구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각각의 사회영향평가 내용들을 역사적으로, 개념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이론적 비판점등을 문헌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사례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려고 노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범위는 미국 공동위원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미국의 제도적인 방향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에 제도적인 적용가능성을 알아보는 데 있다.

II. 한국의 사회영향평가 항목 및 현황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내 사회·경제환경분야의 경우 1987년 고시된 7개 항목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7개 항목들은 인구, 주거, 산업, 공공시설, 교육, 교통, 문화재항목들을 포함한다.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사회·경제항목의 주요평가내용은 표 1과 같다.

1) 이하의 논문에서 '사회영향평가의 원칙과 지침 마련을 위한 공동위원회'를 '공동위원회'로 명명한다.

표 1. 한국 환경영향평가 내 사회·경제환경분야 주요평가내용

인 구	- 인구밀집유발의 정도 및 인구밀집지역에 대한 대책 - 인구밀집에 따른 환경영향 및 대책
주 거	- 주거지역의 도로망 등 연결계획 - 주거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예측 및 대책(이주대책 포함)
산 업	- 주변 산업구조변화 예측 - 어업권, 양식장, 농작물 등에 대한 피해예측 및 대책
공공시설	- 공공시설의 수용용량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교 육	- 교육시설의 수용용량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교 통	- 교통량의 변화와 도로계획과의 관계분석 및 대책 - 주차장, 환승장 입지 및 용량의 적정성 검토 - 기존도로의 V/C비 제시 후 진입도로 확 포장 대책 등 - 가로수목의 선택 및 적정배치
문 화 재	- 문화재 또는 역사 문화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건조물 유적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및 대책 - 유적지에 대한 지표조사의 실시와 유물, 건조물 등의 보호대책

출처: 고시, 훈련, 예규 등 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정집(환경부, 2005)

최근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최종보고서(환경부, 2006)에 따르면, 인구, 주거, 산업 등의 항목은 유지하고 다른 항목은 제외되는 방향으로 축소 조정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대국민 여론조사결과는 사회·경제환경분야를 제외해서는 안된다는 응답이 63%임을 보여 준다. 이러한 제도개선 방향은 현재 실무적으로 “이러한 사회·경제항목이 주요평가항목으로 선정되지 않고 전문검토기관인 KETI평가서 검토 시 검토의견이 거의 없어 실효성이 없다”(환경부, 2006, pp. 44-45)는 논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대국민 여론조사²⁾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는 사회·경제항목이 중요치 않다는 게 아니라, 그에 대한 기법연구가 미진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환경사회학자인 이정환(2004)은 현행의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사회영향평가분야에 대한 적절한 평가체제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한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영향평가는 7개의 사회·경제항목만을 중심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환경부 지침 또한 각각의 사업별 중점항목들만을 다루고 있다. 문제점은 이러한 각각의 항목들이 종합적인(comprehensive) 사회적 영향을 측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영향평가를 위한 실제적인 판단의 정보 또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여러 개발사업으로 인한

사회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사회영향평가 기법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III. 미국의 사회영향평가

사회영향평가를 위한 기법연구는 사회영향의 개념과 사회영향평가를 위한 실제적인 항목별 리스트에 관한 연구로부터 시작 된다. 이러한 연구로부터 사회영향평가를 위한 원칙과 지침, 절차적 모델을 만들어 내는 작업이 수행될 수 있다. 사회영향평가를 위한 연구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 실제적인 진보를 이루고 있다(IOCGP, 2003). 미국연방환경정책법(NEPA) 1조 102항은 “미국의 정책, 규제, 공법은 NEPA적 맥락에서 해석되고 집행되어야 하며, 연방정부의 모든 기관들은 인간의 환경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는 계획이나 정책결정에 있어서 자연과학, 사회과학, 환경설계 기술들을 통합하는, 체계적이고, 학제적 접근방법을 사용할 것”을 주문한다(NEPA, 1970). NEPA에 의해 신설된 CEQ(대통령 직속 환경자문위원회 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는 사회영향을 고려하고 있다(NEPA, 1970). CEQ는 NEPA규정에 상응하도록 각 연방기

2) 설문대상자의 68% 사회·경제 항목 제외 반대(환경부, 2006, p.44).

관의 환경정책·조치를 조율하고 적절한 지침을 하달하는 역할을 한다. CEQ가 발간한 “NEPA절차안 집행을 위한 규제(Regulations for Implementing the Procedural Provisions of th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는 1508.14에 명시된 ‘인간환경(human environment)’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인간환경은 자연·물리적 환경과 그것들이 인간과 맺는 관계들을 포괄한다. 다시 말하자면, 경제적 또는 사회적 효과 그 자체만으로는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될 수 없다. 하지만 경제적·사회적 그리고 자연·물리적 효과들이 상호 연계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서는 인간의 환경에 끼치는 이러한 효과들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CEQ, Regulations, 1986).

미국에서 사회영향평가는 독립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EIS)에 편입되어 실시되고 있다. 비록 독자적인 법적 효력은 없지만, EIS 내에서 그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클린턴의 행정명령 12898에 포함된 ‘환경정의’는 EIS내에 사회영향평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미 상무성과 IAIA가 공동으로 마련한 1993년 12인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공동위원회’가 조직되어 1994년 사회영향평가에 관한 원칙과 지침을 마련하였고, 2003년에 이를 개정한 바 있다.³⁾

1. 미국에 있어서의 사회영향평가 도입 배경

미국에서 사회영향평가란 용어를 사용하고 국가적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알래스카 송유관 연결’(Trans-Alaska Pipeline, 1973)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이 프로젝트로 인해 사회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당시 알래스카 송유관 연결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생물리적 영향에만 초점을 맞췄으며, 인구 주거에 끼치는 사회 영향은 사업 승인이 인가되고 나서야 고려되었다. 즉 약 35만 명밖에 되지 않는 알래스카주에 42,000명의 임시 노동자를 요하는 그 방대한 프로젝트가 토착인구에 어떠한 사회적 영향을 끼칠지의 문제를 철저히 도외시켰던 것이다(Burdge

2002, 6).

알래스카 송유관 프로젝트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그리고 사회영향평가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1978년에 발간된 CEQ 환경지침은 사회영향평가를 여전히 홀대했다(Burdge 2002, 7). 정부의 사회영향평가에 대한 인식결여 속에서 영향평가 대행업체가 사회영향평가를 중요시할 리가 만무했다(Burdge 2002, 7). 사회영향평가에 대한 의지의 결여, 그리고 그것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부재는 사회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환경영향평가의 변두리에 머물게 했다(Burdge 2002, 6). 그렇다고 NEPA가 사회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NEPA는 사회영향도 EIS에 고려 대상임을 명시했다. 그럼에도 기술관료적 요소가 미국의 환경영향평가를 강하게 지배했다. 사회영향평가가 초기에 정착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러한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는 기술관료들과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가 사회영향평가에 대한 명확한 인식 없이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였다는 데 주 이유가 있었다.

또한, 대중의 참여를 사회영향평가와 동일시해왔다는 점도 사회영향평가가 초기에 정착되지 않은 데 일조했다(Burdge 2002, 7). 이러한 경향은 대중의 참여를 목적론적이 아닌, 다시 말해서 프로젝트 시행의 절차적 과정으로만 인식했다는 데 문제가 있었다. 만약 대중 참여라는 절차적 과정이 포함되었다면, 그것으로 사회영향평가는 완수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인식이 지배하였다.⁴⁾ 즉 사회영향평가는 단지 대중과의 협의과정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닌, 어떠한 프로젝트가 피 영향 지역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 지에 대한 근본적 고민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간과했던 것이다.

3) 지침이 마련되었다고는 하나, 미국에서 아직까지 사회영향평가는 법적 구속력을 발휘하지는 않는다(IOCOP, 2003).

4) 스투어트 록키(Stewart Lockie)는 대중의 참여를 단지 절차상의 한 과정으로만 간주하는 미국의 경향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한 부연설명은 본 논문의 미국의 사회영향평가를 비판하는 대목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다(Lockie, 2001).

이러한 제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의 개발사업의 사회영향평가에 대한 요구는 증대되어 왔다(Burdge 2002). 이와 함께, 사회영향평가기법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필요성은 학계 및 기관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라벨 버지(Rabel J Burdge)라는 학자를 중심으로 1993년에 '사회영향평가의 원칙과 지침 마련을 위한 공동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12인으로 구성된-그 중 대다수는 사회과학자 출신이었다-이 '공동위원회'는 NEPA와 CEQ의 맥락에 상응하는 매우 미국적 관점- 기술관료적 입장에서 조망한 '사회영향평가에 관한 원칙과 지침'을 완성했다.⁵⁾ 1993년의 '원칙과 지침'은 꾸준한 미국 내 외의 호응 속에서 2003년에 다시 개정되었다⁶⁾(Vanclay 2006).

2. 미국 '공동위원회'의 원칙과 지침 연구사례

사회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해야 한다. 개발사업과 계획 및 정책으로 인한 사회영향(Social Impact)이란 무엇인가? 사회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수들을 연구해야 하는가? 실제 현장에서 사회영향평가를 수행하는 데 있어 원칙과 지침은 무엇인가? 사회영향평가는 어떠한 절차로 수행되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개념, 변수, 원칙과 지침, 절차의 문제로 요약될 수 있으며 아래는 미국 '공동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현재까지의 미국에서의 사회영향평가 기법마련을 위한 연구 성과를 보여준다.

1) 사회영향(Social Impact)의 개념(Concept)

사회영향평가는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울프(C.P. Wolf)는 사회영향평가를 "정책,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가 가시적인 영향을 드러내기 전인 계획 단계에서 사회영향을 예측·평가하는 것"으로 정의한다(Wolf 1980). 다이에쯔(Thomas Dietz)는 "과학적 정책분석을 민주적 정치 과정으로 융합하는데 중요한 잠재력을 제공하는 하나의 정책 분석 방법"으로 정의한다(Dietz 1987). 부찬과 리버스(Buchan, D. and Rivers, M.J.)는 울프의 개념을 더 넓게 확대하여 계획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정책, 프로젝트

등이 "개인, 그룹, 지역사회에 끼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는 절차"까지도 포괄한다(Buchan and Rivers 1990). 미국 사회영향평가의 원칙과 지침을 확립하는데 중대한 역할을 했던 버지(Burdge, Rabel, J) 역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예측하는데 주안점을 둔다(Burdge 1994).

미국의 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사회영향이란 "어떠한 사적 공적 조치가 인간에게 끼치는 영향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인간이 살고, 일하고, 즐기고 서로 연관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식이 변경되는 것을 포괄한다"(IOCGP, 2003). 1970년에 통과된 NEPA는 연방정부의 어떠한 기관이라도 인간의 환경의 질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요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그 기관이 사회과학을 이용한 환경평가(Environment Assessment) 또는 환경영향 평가서(Environment Impact Statement)를 마련할 것을 주문한다. 여기서 사회과학이란 사회적 분석, 사회·경제 평가, 지역사회영향평가, 사회영향평가, 사회영향평가 등을 포함한다.

2) 사회영향평가(Social Impact Assessment): 변수(Variable)

환경영향평가사업으로부터의 사회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변수들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Burdge, 1994, IOCGP, 1993, 2004). 이러한 변수들은 조사항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회영향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수집으로 이용된다. IOCGP(1993)와 Burdge(1994)는 사회영향평가를 위한 변수로서 대체적으로 5가지로 큰 항목으로 분류했다. 이러한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인구적 특징, 지역적·제도적 구조, 정치적·사회적 자원, 개인·가구 변화, 지역적 자원

5) 이하에서는 '사회영향평가에 관한 원칙과 지침'을 '원칙과 지침'으로 칭한다.

6) 미국의 '원칙과 지침'이 사회영향평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준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에는 기술관료적인 경향을 질타하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사회영향평가에 관한 비판을 다루는 대목에서 좀 더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표 2. 사회영향평가 변수리스트

Interorganizational Committee	버지(burdge)의 26가지 항목
인구적 특징 1. 현 인가와 예상되는 변화 2. 인종의 다양성/분포도 3. 재배치된 인구 4. 임시 노동자의 유입과 유출 5. 계절별 거주민(seasonal residents)	인구적 특징(인구적 영향) 1. 인구변화 2. 연령/성/인종 구성(인종의 분포도)의 상이점 3. 재배치된 인구 4. 임시 노동자의 유입과 유출 5. 계절별 거주민
지역적, 제도적 구조 6. 자발적 결사체 7. 이익집단의 활동 8. 지역 정부의 규모와 구조 9. 역사적 경험(변화) 10. 취업/수입의 특징 11. 소수집단의 취업의 형평성 12. 국지/지역/국가적 연계 13. 산업/상업의 다양성 14. 계획과 지대설정활동의 현존	지역적, 제도적 구조(주민참여) 6. 사업에 대한 의견(태도)의 형성(자발적 결사체) 7. 이익집단의 활동 8. 지역 정부의 규모와 구조의 변이 9. 계획과 지대설정 활동의 현존 10. 산업/상업의 다양성 11. 경제적 불공평의 향상 12. 소수집단의 취업의 형평성 13. 취업 기회의 변화
정치적, 사회적 자원 15. 권력과 권위의 배분 16. 이해관계자의 파악 17. 이익/피 영향집단 18. 리더십 능력과 그 특징	정치적, 사회적 자원 14. 외부 기관의 현존 15. 새 사회 계급의 등장 16. 지역의 산업적/상업적 초점의 전환 17. 주말 거주민의 현존(여가의)
개인/가구의 변화 19. 위해, 건강, 안전에 대한 관점 20. 퇴거/재배치에 대한 관점 21. 정치/사회 제도에 대한 신뢰 22. 주거 안정성 23. destiny of acquaintanceship 24. 정책/사업에 대한 의견 25. 가족/교우의 연계망 26. 사회 복지에 대한 관점	개인/가구의 변화 18. 일상생활과 이동 패턴의 변화 19. 종교 생활의 상이점 20. 가구 구조의 변화 21. 사회 연계망의 붕괴 22. 공중 보건과 안전에 대한 관점 23. 여가 기회의 변화
지역적 자원 27. 지역 사회의 하부 기반의 변화 28. 인디언 부족 29. 토지이용 패턴 30. 문화, 역사, 고고학적 자원에 대한 영향	지역적 자원 24. 지역 사회 하부 기반의 변화 25. 토지 획득과 토지 정리 26. 문화, 역사, 고고학적 자원에 대한 영향

출처: Burdge(1994)와 IOCGP(1993)

좀 더 세부적으로 Burdge(1994)는 총 26개의 세부항목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미국 '공동위원회'는 미국의 맥락에 맞게(예로 인디언 부족에 대한 조사 등) 30개의 세부항목을 변수리스트로서 제안했다. 우리나라의 사회·경제항목에서는 Burdge의 26개 항목 중 인구변화, 재배치된 인구, 임시노동자의 유입과 유출등과 같은 인구적 특징, 지역산업의 특징과 문화재 부문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으나 지역적, 제도적 구조, 정치적, 사회적 자원, 가구의 변화와 같은 대다수 항목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사업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하부

기반의 변화를 살피는 경제적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점은 우리나라와의 큰 차이점이다.

3) 사회영향평가(Social Impact Assessment): 원칙(Principles)과 지침(Guidelines)

공적 부문과 사적 부문을 아우를 수 있는 사회영향평가에 대한 원칙과 지침마련을 목적으로 1992년에 일단의 사회과학자들이 참여한 '공동위원회'가 발족되었고 1993년 지침을 마련하였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미국은 1993년의 지침이 마련되기 전까지 연방정부의 각 기관은 확고한 체계 없이 갈팡질팡했다. 2003년 '공동위원회'는 개발사업(projects)에

서 점차 정책, 계획, 프로그램까지도 포함하도록 그 영역을 넓혔다. 이것을 4가지 PPPPs라 불리며 우리나라의 전략환경평가를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IOCGP 2003). 또한 ‘공동위원회’가 지침개발을 위해 6가지 원칙(principles)을 만들고 그것에 바탕을 둔 세부 지침(guidelines)을 만들었다. 그것은 표 3과 같다.

원칙 1과 그 세부지침에 있어, 대중의 참여는 피

영향 집단을 파악하고, 그들로부터 사회적/생·물리적 의미를 경청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피 영향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참여는 시행자와 피 영향 집단 사이의 상호 교류로 이루어져야 한다.

원칙 2에 있어 지침 2.1.3은 정책과정의 개선점에 대한 피드백이 정책결정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표 3. 미국 사회영향평가 원칙과 지침

원칙(Principles)	지침(Guidelines)
1. 제안된 조치, 프로그램 또는 정책의 영향이 미칠 지역의 인구와 맥락을 광범위하게 이해하라.	지침 1.1 - 이해관계자 그리고 피 영향집단을 파악하고 기술하라. 지침 1.2 - 지구적/지역사회의 기본 정보(개황)을 개발하라.
2. 제안된 조치, 프로그램 또는 정책의 연관된 인간 환경의 핵심요소를 파악하라.	지침 2.1 - 조치 또는 정책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와 이해관계자의 개황으로부터 핵심 사회/문화 문제를 파악하라. 2.1.1: 대중들이 파악하는 영향 2.1.2: SIA시행자가 파악하는 영향 2.1.3: 사회영향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라. 지침 2.2 - 파악된 문제점들을 측정하고 설명할 수 있는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변수를 선별하라.
3. SIA는 타당하고 반복 가능한 과학적 연구개념과 방법론에 기반한다.	지침 3.1 - 연구방법은 그 범위에 있어서 전체적(holistic)이어야 한다. 지침 3.2 - 연구 방법은 조치 또는 정책에 관련된 부차적이고 누적된 사회 영향을 기술해야 한다. 지침 3.3 - 방법론과 가정은 투명하고 반복 가능해야 한다. 지침 3.4 - 조치 또는 정책의 중요성에 적합한 정보 구축과 분석의 형태와 수준을 선별하라.
4. 정책결정에 이용되기 위한 질적 정보를 제공하라.	지침 4.1 - 조치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기술하고 분석하기 위한 질적/양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보를 구축한다. 지침 4.2 - 정보구축방법과 분석의 형태는 과학적으로 엄격해야 한다. 지침 4.3 - 구축된 정보의 엄격성을 확보하라. 지침 4.4 정보의 간격(gaps)
5. 어떠한 환경정의적 문제라도 파악되고 분석되도록 보장하라.	지침 5.1 - 연구방법, 정보, 분석은 취약 집단과 인구를 고려해야 한다. 지침 5.2 - 누가 수혜를 받을지, 손실을 입을지를 파악하고 취약집단의 인구의 취약성을 강조해라.
6. 제안된 조치, 프로그램 또는 정책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하다면 완화방안을 제안하라.	지침 6.1 - 제안된 조치에 대한 사후평가와 감시에 기관, 이해관계자, 지역사회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기제를 구축하라. 지침 6.2 - 영향의 완화가 요구되는 곳에서는 대안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제공하라. 지침 6.3 - 정보의 간격을 파악하고, 정보의 필요성을 평가하라(identify data gaps and assess data needs)

출처: IOCGP(2003)

점을 강조한다. 이것은 정책이 집행되기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책결정 전에 기관 계획가들과 비공식적으로 조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침 2.2에 있어서의 사회적·문화적 변수들은 표 2에서 본 바와 같이 분류할 수 있으며 대중과 SIA시행자가 파악한 모든 SIA변수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상이한 방법으로 다양한 변수를 얻을 수 있는 '상호보완적 연구방법' (예: triangulation)이 필요하다.

원칙3과 그 세부지침은 연구방법론에 관한 것으로 Data Quality Act of 2001라는 연방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2001년에 미 하원 예산심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연방기관이 배포하는 정보에 대해서 그것의 우수성, 객관성, 용이성, 엄격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 법안은 연방기관이 배포하는 정보의 오류에 대해서 피 영향집단이 수정할 수 있는 기제도 마련하고 있다. 더불어 연방기관은 피 영향 집단으로부터의 불만접수의 수와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국회 '예산관리국'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의 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⁷⁾ 이러한 법에 기반을 둔 지침은 환경평가에 사용되는 정보에 대한 실재를 강화시켜 준다. 연구방법은 사용되기 전에 동료 전문가 집단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기존 과학 문헌과 피 영향지역으로부터의 1차 및 2차 자료가 모든 SIA를 위한 세 가지 주요한 정보출처다. SIA시행자는 어떠한 정보라도 Data Quality Act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다음은 지침에서 말하는 주요한 연구를 위한 연구출처다.

• 기존 과학문헌

과거의 유사 사업에 대한 경험적 문헌을 분석한다. 만약 상이한 결과들이 존재했다면, 각 방법론을 면밀히 비교 분석해야 한다.

• 2차 자료

최고의 2차 자료의 출처로는 '인구 조사국 (Bureau of Census)' 과 중요 통계, 지리 통계 등등의 주와 기타 연방기관이 구축한 일상 정보들이다. 또한 agency caseload statistics(가령, 정신건강

센터, 경찰서, 보험이나 재정 규제 기관 등으로부터), 발간되거나 미 발간된 역사 자료들(지역 도서관이나 지역 역사학회 등에서), 서비스 제공자들에 의한 자료들(상공회의소, 관광국, 교회 등), 각 지역 신문사 등도 2차 자료의 주요한 출처다.

• 피 영향 집단으로부터 주요 정보

질문지 작성, 구전사(oral history), 핵심 이해관계자와의 인터뷰 등이 있다. 각 지역 거주민들은 각 사회적·경제적 상황과 정책으로 인한 잠재적 영향에 대한 주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원칙 5에서 제기되는 환경정의의 문제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활발히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다. 최근 미국 CEQ는 환경정의항목을 환경영향평가에 반드시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CEQ, 1007a, 1998). 환경정의는 클린턴 대통령이 집행한 '행정명령 12898 (Executive Order 12898)' 에서 그 법적 구속력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환경정의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미국 소수인종 및 흑인의 인권과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시대적 요구에 상응하여 입법화된 1964년 미국 '시민권법(Civil Rights Act of 1964)' 의 제 6장에서 연원한다고 받아들여진다(Shrader-Frechette 12). 소수인종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오랜 투쟁의 산고가 결실을 맺어 이루어진 이 제 6장은

미국의 어느 누구라도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지의 이유로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는 어떠한 프로그램 또는 조치에의 참여에 제외되어서는 안 되며, 그러한 프로그램 또는 조치의 혜택에 부인되어서도, 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수 인종과 저소득 인구에 관한 환경정의를 다루기 위한 연방 조치(Federal Actions to Address Environmental Justice in Minority Populations and Low-Income

7) 정부가 배포하는 정보의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이 법안이 사기업의 정부규제를 공박하는데 쓰이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 법안을 상정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던 제임스 토지(James J. Tozzi)는 사기업에 우호적인 역할을 해오던 '효율적 규제를 위한 센터(Center for Regulatory Effectiveness)' 를 운영해 오면서 정부 규제 완화를 부르짖어 왔다(Mooney, 2006).

Populations)”라는 제목의 ‘행정명령 12898’ 역시 ‘시민권법’의 정신을 계승하여

연방 기관이 소수 인구나 저소득 인구에 끼치는 정책, 프로그램 그리고 조치들의 불균형하고 불리한 건강적 또는 환경적 영향을 파악하고 다음으로써 환경정의의 임무를 실행해야 한다

라고 환경정의의 목표를 설정했다(Executive 7629).

CEQ는 이러한 ‘행정명령 12898’과 NEPA적 맥락을 고려하여 “환경정의: NEPA맥락에서의 지침”을 1997년에 작성했다. 이 지침은 환경정의와 관련한 6가지 일반원칙을 제시하였는데, 그 일반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방기관은 영향지역의 소수 인종과 저소득층을 파악해야 한다.

둘째, 정보를 취합함에 있어 소수 인종이나 저소득층에 불공평한 악영향이 끼치지 않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셋째, 제안된 조치가 자연적 물리적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더 악화시키는 상호 문화사회 역사 경제적 요소를 파악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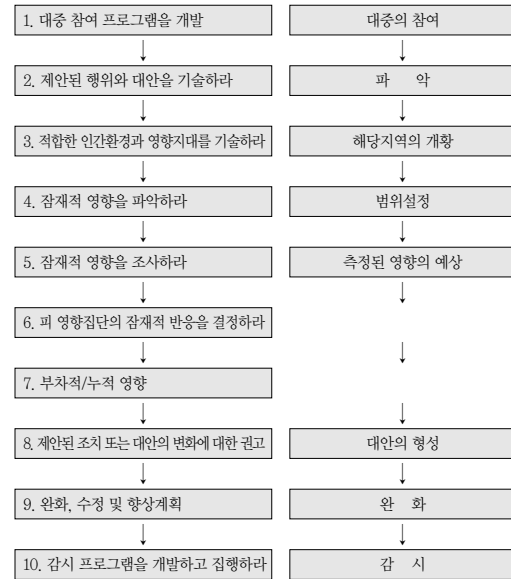
넷째, 연방기관은 주민참여를 고무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다섯째, 의미 있는 주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여섯째, 미국 인디언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⁸⁾

4) 사회영향평가(Social Impact Assessment): 절차적 모델

사회영향평가는 그림 1에서 보이는 대로 10가지 절차를 포함한다. 이러한 절차들은 논리적으로 순차적인 면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 실무에서는 종종 중첩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순서는 1986년 미국 CEQ의 지침에 나와 있는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유사함을 보여준다. 대략적으로 대중의 참여, 제안된 조치와 대안 파악, 해당지역 개황파악, 잠재적 영향을 고려한 범위설정, 잠재적 영향 조사, 대안의 형성, 완화를 통한 저감방안 설정, 사후환경조사와 감시로 이어지는 절차적 모델을 미국 ‘공동위원회’는 제안한다(IOC GP 2003).



← 사회영향평가 과정의 모든 단계 내에서 이익/피 영향집단을 포함한다 →

출처: IOC GP(2003)

그림 1. 사회영향평가과정의 단계

3. 미국 사회영향평가에 관한 비판

1993년의 ‘원칙과 지침’을 둘러싼 미국 내 외의 호응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첫 번째 비판은 ‘원칙과 지침’이 미국의 NEPA법에 너무 얽매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을 수용할 것으로 기대했던 2003년의 ‘원칙과 지침’은 사회영향평가의 범위만을 확대-93년에는 프로젝트에만 초점을 맞췄던 것을 계획, 정책, 프로그램까지 확대했음-했을 뿐, 사회영향평가를 법적 규제의 틀에서 바라본 종래의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미국의 ‘원칙과 지침’을 비판해온 프랭크 밴클레이(Frank Vanclay)를 위시한 일군(一群)의 집단은 2003년에 ‘사회영향평가에 관한 국제적 원칙(International Principles for Social Impact Assessment)’을 마련했다(Vanclay 2006, 4). 클

8) 미국 인디언의 참여를 보장해야 하는 규정은 미국 인디언이 소수인종으로서 받아온 박해의 역사를 고려한 미국의 예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하지만 소수인종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소득층을 고려해야 한다는 환경정의의 연장선상에서, 여섯째 규정을 본 논문에서 제외하지는 않았다.

레이는 ‘원칙과 지침’이 미국의 NEPA와 CEQ의 규제적 틀에 얽매어 있음을 비판했다. 미국의 ‘원칙과 지침’이 전제하는 사회영향평가의 철학은 “개인의 재산권의 보호-영향 예측, 완화와 보상의 기제”에만 기초해 있다는 것이다(Vanclay 2006, 6). ‘국제적 원칙’은, 사회영향평가란 규제적 맥락이상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⁹⁾. 사회영향평가라는 것은 꼭 법적으로 의무화되지 않더라도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사기업도 법적 규제가 아닌 사회적 책임의 맥락에서 사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Vanclay 2006, 10).

‘원칙과 지침’에 관한 두 번째 비판은 ‘원칙과 지침’이 사회영향평가의 사회과학적 ‘예측’을 지나치게 강조하는데 있다¹⁰⁾(Lockie, 2001, p. 280). 그렇다고 ‘예측적’ 사회영향평가가 피 영향 집단의 상충적 이해관계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전예측은 언제까지나 사업이나 정책이 진행되기 전까지만 가능할 뿐이라고 록키(Stewart Lockie)는 주장한다(Lockie, 2001, p. 281). 사업이후 진행되는 변화의 역학적 관계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계획이나 정책 등이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 바뀔 가능성이 다분한 “사회적 영역(social terrain)”을 배제해 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Lockie, 2001). 드리제크(J Dryzek) 역시, “정책개입의 결과를 ‘예측’하고 통제하려는 시도는 ... 이해관계자가 지니는 가치와 열망, 이해관계, 정치적 신념 등의 개연적 변화에 주요한 영향을 끼치는 논쟁과 정책결정과정의 기회를 앗아 버린다”고 설파한다(Dryzek, 1990). 무엇보다 ‘예측적’ 사회영향평가는 사회영향을 “항목중심으로만 보려고 하는 타성(checklist mentality)”을 조장한다(Vanclay, 2002). 벤클레이는 사회영향평가를 단순한 항목의 검토를 넘어선, 인간에게 끼치는 모든 영향의 검토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그는 항목중심보다는 ‘영역’(area) 중심으로 사회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한다(Vanclay, 2006, p. 11).

‘원칙과 지침’에 대한 세 번째 비판은 사회영향평

가에 관한 근본적 고찰과 밀접히 연관된다. ‘원칙과 지침’의 근본적 토대는 미국 사회의 기저에 깔려있는 다원론적 이익집단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제도적 절차’에 기반한다(Lockie, 2001). 하지만 ‘원칙과 지침’의 비판가들은 절차적 보장만으로는 사회영향평가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회영향은 “그것에 연관된 사람들의 공간, 활동, 지역사회, 변화 등에 밀접히 연관된 신축적 상충적인 의미(fluid and contested meanings)”를 포괄하기 때문이다(Lockie, 2001). “의사소통의 합리성(Communicative Rationality)”은 모든 사람이 어떠한 타협의 결과에 만족할 수 없지만, 그러한 결과에 이르게 하는 “전체적 공평성과 집단적 공통 이해관계”에 기초한 합리성에 도달할 수 있음을 전제한다. 록키는 이러한 의사소통의 장으로써의 사회영향평가만이 프로젝트에 집중되어온 영향평가를 탈바꿈 할 수 있으며 전략적 측면에서도 변화에 신속적으로 반응하는 “적응적 관리”를 원활케 한다고 주장한다.

IV. 미국과 한국의 SIA 비교분석

현재 한국에서 실질적인 사회영향평가가 실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직접적인 비교 분석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표 4는 현재의 한국의 수준을 미국과 비교하여 나타내 준다. 공통점으로는 미국이나 한국 모두 사회영향평가가 법적구속력 가지지 않는다는 점이며 환경영향평가 내 사회·경제항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고려되는 사회·경제 항목 수는 한국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한국은 아직 SIA 원칙과 지침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 이미 공론화되어 범

9) 벤클레이가 주도하였지만, ‘국제적 원칙’은 수백 명의 다양한 학제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의 조력으로 완성되었다(Vanclay 2006, 4).

10) 록키의 주장과는 반대로, 소더스트롬(Soderstrom)을 위시한 과학 실증주의자들은 ‘원칙과 지침’의 사회영향평가가 지나치게 애매모호하며, 과학적으로 불충분하다고 주장한다(Lockie 280).

로 규정되어 있는 환경정의(Environment Justice)나 정보관리 감독(Data Quality)에 관한 사항들을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SIA작성을 위한 전문 인력을 전혀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이러한 부분에 사회학자들을 중심으로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표 4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실질적인 사회영향평가를 시행하지 못하고 단지 환경영향평가에서 사회·경제항목만을 다루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사회·경제항목을 현 환경영향평가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고찰하는 것은 비판적으로 한국의 상황을 이해하고 미국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향후 사회영향평가를 발전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최근에 일어난 환경분쟁으로 대표적인 새만금 사업과 천성산 공사는 사회영향평가 결여로 인한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합리적 의사소통”에 의한 주민과의 합의라는 사회영향평가의 궁극적 목적(이것은 미국의 사회영향평가를 비판하는 대목에서 논의되었다)은 차치하고라도, 그러한 합의 절차마저도 무시되었다(Habermas, 1984). 이로 인한 사회비용의 증가는 굳이 대법원의 판결까지의 과정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명백하다(구자건 2006, 78).

이러한 사회영향평가에 대한 인식과 제도의 부재는 여러가지 이유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사회영향평가를 시행할 수 있는 전문가가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며, 이는 대행업체와 평가기관의 사회영향에 대한 소홀로써 나타난다(구자건 2006, 81). 둘째, 항목 중심(variable list)은 그 본질상 기술 관료적인 정량적 방법을 선호하게 된다.

표 4. 한국과 미국의 SIA 비교

		한 국	미 국
SIA 원칙 및 지침 유무		×	○
SIA 법적구속력 유무		×	×
환경영향평가 내 사회·경제 항목	유무	○	○
	항목 수	7	30
SIA/EIA 내 환경정의 포함 유무		×	○
정보제공/관리에 관한 감독유무		×	○
SIA 작성을 위한 전문성 유무		×	○

이러한 기술 관료적 환경에서는 질적(정성적) 방법으로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사회영향이 도외시 될 수 있고, 또 그래온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한국의 사회·경제항목 자체도 지극히 그 범위가 협소하며, 항목자체의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표 2에 제시된 미국의 사회영향 변수 리스트와 표 1의 한국의 항목을 비교해 보면, 한국이 얼마나 사회영향을 요식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이 역력히 드러난다. 또한 19개의 대형국책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사회·경제 항목을 검토한 한 연구는, 사회·경제 항목에 대한 평가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었다(이상돈, 2003).

셋째, 한국의 사회영향평가의 부재는 “사회문화적 구조”에서 기원한다는 시각이 존재한다(구도완, 2003). 사회영향평가는 본질적으로 정책이나 사업이 인간에 끼치는 영향에는 ‘형평성’이 존재해야 함을 전제한다. 미국의 경우, 형평성을 위한 오랜 세월을 걸친 흑백 갈등과 민권투쟁은 ‘시민권법(Civil Rights Act of 1964)’ 통과에 큰 기여를 했고, 클린턴 대통령이 행정명령 12898에서 언급한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는 ‘시민권법’의 기본이념을 법적으로 구속시켰을 뿐이다. 이 사례는, 사회영향평가가 민주화의 노정(路程)과 맥락을 같이 함을 시사한다. 한국은 1960년 대 이래 경제개발의 기치 아래, 사회영향과 형평성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은 사회적 화두(話頭)에서 제외되어 왔다.

V.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여기에 논의된 미국의 ‘원칙과 지침’은 NEPA의 맥락에서 사회영향평가를 집행하는 기관이나 제도를 지원하도록 고안되었다. 비록 ‘원칙과 지침’이 기술 관료적 특성으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사회평가의 개념, 항목별 리스트, 원칙과 지침, 그리고 절차적 모델까지 제시함으로써 한국 사회영향평가에 좀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사회평가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영향평가 개발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안이 필요하다.

첫째, 무엇보다 사회영향평가에 대한 원칙과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원칙과 지침이 부재한 상황에서 사회영향에 대한 깊이 있는 평가와 분석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미국사례는 현재 7개의 사회·경제항목 중심으로만 사회영향을 평가하는 한국 환경영향평가에 유용한 정책적 제도적 연구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표 2에서 언급한 다양한 사회변수(항목)들은 한국의 협소한 항목검토에 사회영향의 광의성과 다양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셋째, 무엇보다 사회·경제 항목 수를 늘리고 그에 따른 철저한 평가를 위해서는 충분한 전문 인력이 준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영향평가에 대한 필요성을 각 대학교, 대학원 등의 환경평가 관련학과에 널리 알리고,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제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넷째, 미국의 예처럼 '환경정의'를 법제화하여 비록 사회영향평가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할지라도, 사회영향에서 '환경정의'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환경정의'와 관련한 '형평성'의 문제는 단순히 사회영향이 인간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넘어선, 민주주의 사회의 기반을 떠받드는 기본 원칙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이러한 '형평성'과 관련하여, 각 환경영향평가 기관은 사회영향평가 시행 계획, 과정, 사후평가 등을 미국처럼 인터넷 등에 공개하여(Data Quality Act), 해당 지역 주민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함과 아울러 정보의 질과 공평성을 확보하는 작업이 구축되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대안만으로도 한국 사회영향평가의 갈 길이 험난하지만, 미국의 사회영향평가가 한국이 추구해야 할 최선의 제도로 생각되어서는 안 된다. 미국의 사회영향평가를 비판하는 많은 전문가들은 '원칙과 지침'이 단순히 "항목중심으로만 보려고 하는 타성(checklist mentality)"을 낳을 수 있음을 경계한다(Vanclay 2006, 11). 사회영향평가는 단순한 기술관료적 절차가 아닌, 사회영향과 그에 관련된 인간의 가치와 활동이 상응 상충하는 장의

역할, 그리고 그러한 장의 역할을 가능하게 하는 "의사소통의 합리성(Communicative Rationality)"까지도 포함하기 때문이다(Lockie 283).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처럼 사회영향평가 원칙과 지침마저 부재한 상황에서, 사회영향의 근본적 의미까지 고민하는 것은 시기상조 일 수 있다. 오히려 미국의 '원칙과 지침'의 한계를 파악하고, 그것이 가지는 여러 장점들을 적절히 활용하여 한국 현실에 맞게 주체적으로 변용(變容)한다면,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국제적 원칙'보다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 환경부, 2005, 고시, 훈련, 예규 등 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정집, 환경부.
- 환경부, 2006, 환경영향평가 혁신포럼 2006 최종 보고서, 환경부.
- 김지영 외, 2002, 환경영향의 합리적 예측 평가를 위한 기법 연구,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KEI) RE-10.
- 강현 외, 1998, 환경영향평가, 동화기술교역.
- 구도완, 2003, 사회영향평가의 제도화 방안. 사회갈등적 환경현안의 조정체계 개선방안 연구. 국회의원 박인상, 한국환경사회학회 공동 프로젝트 보고서: 111-133.
- 구자건, 2006, 환경갈등과 사회영향평가, 2006년도 추계학술발표회 자료집,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77-98.
- 박순영, 2001. '앞강'에서 '동강'까지-영월댐 수몰 예정지 주민들의 경험. ECO 창간호. 한국환경사회학회
- 이상돈, 이정환, 정양이, 2003, 대항국책사업을 통해 본 사회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3년도 추계학술발표회 자료집,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114-117.
- 이시재, 2002, 사회영향평가의 이론과 방법. ECO 제 3호. 한국환경사회학회.

- 이정환, 2004, 사회영향평가 제도화 방안연구. 가톨릭대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 논문.
- 윤순진, 2005, 환경 갈등의 예방, 완화, 해소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개선방향: 시민참여적 사회영향평가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환경분쟁연구소
- 정용, 2001, 지속적 발전과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10(4), 279-286.
- 한상욱, 2000,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회고와 전망. 환경영향평가학회 2000년 추계학술 발표집, 29-33.
- Buchan, D. and Rivers, M. J., 1990, Social Impact Assessment: Development and Application in New Zealand, Impact Assessment Bulletin, 8.4, 97-105.
- Burdge, R. J., 1994, A Community Guide to Social Impact Assessment, Middleton: Social Ecology Press.
- Burdge, R. J., 2002, Why is Social Impact Assessment the Orphan of the Assessment Process, Impact Assessment and Project Appraisal, 20.1, 3-9.
- CEQ, 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 1986, Regulations for Implementing the Procedural Provisions of th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Government Printing Office, Washington DC.
- CEQ, 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 1997a, Environmental Justice: Guidance Under th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Office of the President, Washington DC.
- CEQ, 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 1997b, Cumulative Effects Handbook, available at <<http://ceq.eh.doe.gov/nepa/nepanet.htm>>.
- CEQ, 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 1998, Final Guidance for Incorporating Environmental Justice Concerns in EPA's NEPA Compliance Analyses, Office of the President, Washington DC.
- Dietz, Thomas, 1987, Theory and Method in Social Impact Assessment, Sociological Enquiry, 57-69.
- Dryzek, J, 1990, Discursive Democracy: Politics, Policy and Political Scie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1994, Executive Order 12898: federal actions to address environmental justice in minority populations and low-income populations, Federal Register, 59.
- Habermas, Jürgen, 1984,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Volume One: Reason and the Rationalisation of Society, Cambridge: Polity Press.
- IOCGP, Interorganizational Committee on 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Social Impact Assessment, 1993, Guidelines and Principles for Social Impact Assessment, US Department of Commerce NOAA Tech Memo NMFS-F/SPO-16, reprinted in Impact Assessment, 12.2, 107-152.
- IOCGP, Interorganizational Committee on 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Social Impact Assessment, 2003, 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Social Impact Assessment in the USA, Impact Assessment and Project Appraisal, 21.3, 231-250.
- Lockie, S., 2001, SIA in Review: Setting the Agenda for Impact Assessment in the 21st Century, Impact Assessment and Project Appraisal, 19.4, 277-287.
- Mooney, C., 2006, The Republican War on Science, remarks delivered to the

- American Institute of Biological Sciences.
Washington DC.
http://blueskybroadcast.com/Client/AIBS_0606/docs/Mooneyvspecial.pdf
- NEPA,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1970, Public Law 91-190; 852-859.42, U.S.C and as amended Public Law 94-52 and 94-83 42 U.S.C., 4321-4347.
- Shrader-Frechette Kristin, 2002, Environmental Justice: Creating Equality, Reclaiming Democrac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Vanclay, F., 2002, Conceptualising Social Impact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view*, 22, 183-211.
- Vanclay, F., 2006, Principles for Social Impact Assessment: A Critical Comparison between the International and US Document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view*, 26, 3-14.
- Wolf, C. P., 1980, Getting Social Impact Assessment in the Policy Arena,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view*, 1.1, 27-36.

최종원고채택 07. 02. 07